

9. 住宅關聯資金 貸出金利 變更內容

1. 국민주택기금 대출이율

○ 사업주체앞 대출이율

자 금 별	현 행	변 경	비 고
공공분양, 재개발, 근로 복지, 다세대 주택자금	연 10%	연 9.5%	
조립식 주택설비 자금	연 12%	연 11%	

○ 입주자앞 대출이율

자 금 별	현 행	변 경	비 고
공공분양, 조합, 재 개발 주택 자금	연 10%	50m ² 초과 : 연9.5% 40m ² 초과 : 연8.5% 40m ² 이하 : 연7.5%	- 시행일이전에 지원된 주택 은 연9.5%적용
근로복지주택자금	연 8%	50m ² 초과 : 연8.5% 40m ² 초과 : 연8.0% 40m ² 이하 : 연7.5%	- 대출일로부터 5년 경과후 부터는 공공분양주택자금 이율 적용
다세대주택자금	연 10%	연 9.5%	
주거환경개선 주택 자금	연 10%	연 8.0%	

주)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기준임

※ 시행일 : 1993. 5. 1

※ 이미 지원된 대출금의 변경이율 적용시기

- 정기상환 대출금은 시행일부터 변경이율이 적용
- 할부상환 대출금은 시행일이후 최초 도래하는 약정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변경이율이 적용

2. 민영주택자금(주택은행)대출이율

구	분	주택 규모	이 율		비 고
			종 전	변 경	
〈집단주택자금〉	○ 분양주택건설자금	60m ² 이하	10.0%	9.0%	- 사업자대지구입 자금포함 - 1년초과시 0.5% 가산
	○ 건설업체운전자금				
	○ 대지조성자금	60m ² ~85m ²	10.5%	9.5%	- 대환분은 개인에 준함
	○ 기자재시설및운전자금				
	○ 임대주택건설자금				
	○ 사원주택건설자금				
	○ 사택자금				
○ 기숙사건설자금					
〈개인주택자금〉	○ 주택임차자금	85m ² 이하	10.0%	9.5%	* 집단주택자금의 입주자앞 대출포 함
	○ 주택신축, 구입자금	40m ² 이하	10.0%	9.5%	
		40m ² ~60m ²	10.5%	10.0%	
		60m ² ~85m ²	11.0%	10.5%	
		85m ² 초과	11.5%	11.0%	
	○ 주택개량자금	100m ² 이하	11.0%	10.5%	
	○ 대지구입자금	330m ² 이하	11.0%	10.5%	
※ 연체이자율			20.0%	17.0%	

※ 시행일 : '93. 3. 26

- ┌ 1차 대출금리 변경조정 : '93. 1. 26
- └ 2차 대출금리 변경조정 : '93. 3. 26